

제429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안건조정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9월4일(목)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2.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9)
3.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80)
4.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83)
5.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68)
6.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67)
7.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71)
8.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4)
9.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81)
10.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66)
11.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4)

상정된 안건

1.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2
- o 조정위원장(박지원) 인사 3
2.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9)
..... 3
3.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80)	3
4.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83)	3
5.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68)	3
6.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67)	3
7.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71)	3
8.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4)	3
9.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81)	3
10.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66)	3
11.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4)	3

(19시34분 개의)

○조정위원장직무대행 박지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안건조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조정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인 본 위원이 국회법 제47조 및 제57조의2에 따라 조정위원장 선출을 진행하겠습니다.

1.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조정위원장직무대행 박지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57조의2제5항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원내교섭단체 소속 위원 중에서 선출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1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님 세 분 중에서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위원 박지원 위원님을 위원장후보로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정위원장직무대행 박지원 김용민 위원께서 박지원 위원을 추천했고 이성윤·박은정 위원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성립이 되었습니다.

후보로 추천된 저를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지원 조정위원장직무대행, 조정위원장으로서 사회 계속)

○ 조정위원장(박지원) 인사

(19시35분)

○**조정위원장 박지원** 방금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지원입니다.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개하는 게 좋겠지요? 비공개로 해요?

○**김용민 위원** 예, 공개.

○**조정위원장 박지원** 공개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공개 찬성하지요?

○**박은정 위원** 예, 동의합니다.

○**조정위원장 박지원**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언론 공개는 공개로 결정하고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취재를 자유스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2.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9)
3.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80)
4.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83)
5.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68)
6.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67)
7.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71)
8.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4)
9.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81)
10.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66)
11.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4)

(19시36분)

○**조정위원장 박지원**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1항까지 이상 10건의 법안을 일괄 상정합

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그동안의 심사 경과를 보고받고 기관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박병섭 전문위원께서 그동안 심사 경과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9월 2일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을 심사한 후 대안을 의결하였고 9월 4일 전체회의 대체토론을 거친 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의 안건과 관련하여 9월 2일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장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을 심사한 후 대안을 의결하였고 9월 4일 대체토론을 거친 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의 안건과 관련하여 9월 2일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이성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을 심사한 후 대안을 의결하였고 9월 4일 대체토론을 거친 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위원장 박지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관의 의견을 간략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먼저 법무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다른 의견 없습니다.

○조정위원장 박지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원행정처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희들도 대체토론시간에 말씀드린 것 외에 다른 의견 없습니다.

○조정위원장 박지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윤 위원 토론해 주세요.

○이성윤 위원 이번 개정안에는 3특검 공히 ‘파견검사는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을 받아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제가 그 3개 특검법을 보면 김건희 특검법은 6조 6항에 공수처 파견검사를 1명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내란 특검법에는 6조 6항에 공수처 파견공무원은 3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 해병 특검법에는 6조 5항에 10% 이상을 공수처 공무원으로 파견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이번 개정안에 파견검사가 특별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는 규정이 들어갔는데요. 제가 1소위에서 충분히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파견검사의 충실한 법정 공소유지를 위해서는 법률 부분에 약간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채 해병 특검법 6조 7항에서 보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 군사법원법과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반하지 않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공수처 검사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검사가 파견검사를 지휘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해서 법을 좀 다듬었으면 하는데요. 6조 7항에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 군사법원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사, 수사처 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반하지 않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준용한다’라고 명확히 해서 향후 3특검이 제대로 파견검사, 공수처 파견검사를 지휘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위원장 박지원 또 토론 신청……

김용민 위원.

○김용민 위원 먼저 이렇게 중요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는데 이 회의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 위원들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내용과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전체회의 때 논의했던 부분이긴 한데요. 재판의 중계와 관련된 부분을 아까 전체회의 때 논의했던 것처럼 조정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내란 특검에서는 재판 1심은 중계를 의무적으로 하되 공판준비기일은 제외하고 그다음에 ‘재판장은 국가안전보장을 중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피고인, 검사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는 재판의 일부를 중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단서를 넣어서 이 부분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각 특검, 3특검법 공히 재판 중계 부분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비식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고 재판장이나 판계 공무원들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규정을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란 특검법과 관련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의무적 중계와 관련된 규정은 유예기간을 1개월 정도 두는 것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수정안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위원 위원장님, 토론 종결 요청드립니다.

○조정위원장 박지원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조정안의 내용과 처리 방식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기존 소위에서 심사한 내용을 존중하여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에 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정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조정안을 채택하기에 앞서서 축조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김건희 특검법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법률안을 통합한 조정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 제6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다음, 안 제7조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 제9조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 제10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24조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부칙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의 법률안을 통합한 조정안에 대해 축조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2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 제6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 제7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 제9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 제10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23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부칙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의 법률안을 통합한 조정안에 대해 축조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 제6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 제7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 제8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 제10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 제11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25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부칙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의 의결 내용에 토론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서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조정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의 의결 내용에 토론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조정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의 법안은 각각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의 의결 내용에 토론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조정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자구 정리 등에 대한 사항은 조정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성호 장관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의 직원, 속기사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취재하신 언론인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0분 산회)

○출석 위원(4인)

김용민 박은정 박지원 이성윤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병섭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

처장 천대엽